

대전지방법원 2021. 10. 19 선고 2021나106027 판결 [부당이득금반환]

재판경과

대전지방법원 2021. 10. 19 선고 2021나106027 판결

대전지방법원 2021. 5. 6 선고 2019가단118576 판결

전문

원고, 항소인 1. A

2. B

3. C

4. D

5. E

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대영

피고, 피항소인 1. F

2. G

3. I

4. J

5. L

6. M

7. N

8. O

9. Q(선정당사자)

변론 종결 2021. 9. 7.

판결 선고 2021. 10. 19.

제1심판결 대전지방법원 2021. 5. 6. 선고 2019가단118576 판결

주 문

1.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.
2.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.

N

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

1. 청구취지

각 원고 A, B, C에게, (1) 피고 F, G는 각 487,206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20. 10. 21.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 송달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%의 비율에 의한 금원과 2020. 1.

1.부터 별지 1 부동산목록에 대한 점유종료일까지는 매월 각 23,304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고, (2) 피고 I, J, L, M, N, O은 각 449,49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20. 10. 21.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 송달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%의 비율에 의한 금원과 2020. 1.

1.부터 별지 1 부동산목록에 대한 점유종료일까지는 매월 각 3,89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고, (3) 피고(선정당사자) Q(이하 '피고 Q'이라 한다), 선정자 R, S, T은 각 101,01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20. 10. 21.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 송달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%의 비율에 의한 금원과 2020. 1. 1.부터 별지 1 부동산목록에 대한 점유종료일까지는 매월 각 3,89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.

원고 D에게, (1) 피고 F, G는 각 189,702원 및 이에 대하여 2020. 10. 21.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 송달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%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고, (2) 피고

I, J, L, M, N, O은 각 251,61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20. 10. 21.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 송달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%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.

원고 E에게, (1) 피고 F, G는 각 297,503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20. 10. 21.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 송달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%의 비율에 의한 금원과 2020. 1. 1.부터 별지 1 부동산목록에 대한 점유종료일까지는 매월 각 23,304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고, (2) 피고 I, J, L, M, N, O은 각 197,88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20. 10. 21.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 송달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%의 비율에 의한 금원과 2020. 1. 1.부터 별지 1 부동산목록에 대한 점유종료일까지는 매월 각 3,89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고, (3) 피고 Q, 선정자 R, S, T은 각 101,01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20. 10. 21.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 송달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%의 비율에 의한 금원과 2020. 1. 1.부터 별지 1 부동산목록에 대한 점유종료일까지는 매월 각 3,89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(제1심판결 중 제1심 공동피고 AE, AF에 대한 부분은 AE, AF이 항소하지 않아 분리 · 확정되었고, 원고들은 제1심 공동피고 H에 대한 소를 이 법원에서 취하하였다).

2. 항소취지

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한다.

각 원고 A, B, C에게, (1) 피고 F, G는 각 468,619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20. 10. 21.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분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%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고, (2) 피고 I, J, L, M, N, O은 각 419,33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20. 10. 21.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분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%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고, (3) 피고 Q, 선정자 R, S, T은 각 70,85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20. 10. 21.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분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%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.

원고 D에게, (1) 피고 F, G는 각 189,702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20. 10. 21.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분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%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고,

(2) 피고 I, J, L, M, N, O은 각 251,61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20. 10. 21.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분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%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.

원고 E에게, (1) 피고 F, G는 각 251,854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20. 10. 21.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분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%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고, (2) 피고 I, J, L, M, N, O은 각 167,72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20. 10. 21.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분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%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고, (3) 피고 Q, 선정자 R, S, T은 각 70,85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20. 10. 21.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분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%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.

이 유

1. 제1심판결의 인용

원고들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, 제1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.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,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원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거나 추가하는 주장에 관하여 제2항과 같이 추가판단을 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,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(원고들이 이 법원에서 소를 취하한 H에 관한 부분은 제외한다).

<고치는 부분>

○ 제1심판결 제5면 이유 부분 제1의 마.항을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고친다.

『피고 F, G는 별지 2 부동산목록(이하 '이 사건 제2목록') 제1항 기재 건물의 각 1/2 지분소유권자, 피고 I는 이 사건 제2목록 제3항 기재 건물의 소유자, 피고 J는 이 사건 제2목록 제4항 기재 건물의 소유자, 선정자 R은 이 사건 제2목록 제5항 기재 건물의 소유자, 피고 L는 이 사건 제2목록 제6항 기재 건물의 소유자, 피고 M, N, O은 이 사건 제2목록 제7항 기재 건물의 각 1/3 지분소유권자,

선정자 S은 이 사건 제2목록 제8항 기재 건물의 소유자이고(이하 이 사건 제2목록의 각 건물을 통틀어 '피고들 소유 건물'), 피고 Q와 선정자 T은 대전 동구 Z 대 1,076m²의 공유지분권자이다.』

2. 추가판단

원고들은, 이 사건 통행로가 그 현황과 지목상 도로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부당이득 반환청구의 상대방이 자신이 얻는 이익에 관하여 그러한 이익을 보유할 권원이 있음을 주장·증명하지 아니하는 한 그 이익을 토지의 소유자에게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.

그러나 이 사건 제1 내지 제3 토지의 소유자였던 X와 그 승계인인 원고들은 이 사건 통행로에 대하여 도로로 사용되는 것이 폐지될 때까지 배타적 사용수익권을 포기하였거나, 적어도 피고들과 인근 주민 및 일반 공중에게 이를 도로로 사용할 수 있도록 무상사용을 승낙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는 것은 앞서 본 바와 같다.

따라서 이 법원에서도 이 사건 통행로가 무상으로 일반 공중을 위한 통행로로 제공되었다고 판단하는 이상, 이와 다른 전제에서 피고들에게 부당이득이 성립한다고 주장하는 원고들의 주장은 나아가 다른 점에 관하여 살펴 볼 필요 없이 받아들이기 어렵다(원고들이 인용하는 대법원 2020. 10. 29. 선고 2018다228868판결의 사안은 문제가 되는 도로가 무상으로 일반 공중을 위한 통행로로 제공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었던 경우로서 사실관계를 달리하는 이 사안에서 그대로 원용할 수 없다).

3. 결론

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를 모두 기각한 제1심판결은 정당하고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재판장판사이태영

판사김윤종

판사윤현정

별지